

#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8-2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

## 2. 제안이유

-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지방 교육정책 관련 시·군·구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기능(안 제2조)

-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
-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, 시·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-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-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**나. 구성 및 임원(안 제3조~제5조)**

- “별표” 지방자치단체로 구성,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
※ 51개 지방자치단체 가입(2019. 9. 기준)
-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및 사무총장(복수의 부회장 가능)
-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

#### **다. 총회 및 의결(안 제6조)**

-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/3 이상이 동의할 때 소집
-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,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(회의 개시 전까지 위임장 제출)

#### **라. 경비부담(안 제12조)**

-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
※ 연 5,000천원(‘18.10.10. 총회 의결사항)

- 붙임**
1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.
  2.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  3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  4. 방침결재문 1부.

##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

**제1조 [목적]**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·군·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,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[기능]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
2.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, 시·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5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전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6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 [구성]**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**제4조 [임원]**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.  
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 
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.  
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  
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 
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**제5조 [임원의 임기]**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 [총회 및 의결]**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·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 [의안의 제출]**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8조 [안건의 배부]**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**제9조 [의견의 청취]**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 [회의결과에 대한 조치]**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**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  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·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.  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  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**제12조 [경비부담]**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**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 
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 [규약 개정]**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5조 [운영세칙]**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- 제16조 [가입 및 탈퇴]**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  
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,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  
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.

## 부 칙

- ① (효력발생)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  
② (임기)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[별표]

##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

### □ 51개 기초지방자치단체

(지방자치단체 건제순, 2019. 9. 26. 기준)

지 역	지 방 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	24
부 산	북구	1
울 산	중구	1
인 천	미추홀구	1
광 주	서구	1
대 전	대덕구	1
경 기	수원시, 고양시, 안산시, 안양시, 화성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김포시, 광명시, 오산시, 구리시, 여주시	12
강 원	원주시, 홍천군	2
충 북	보은군	1
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	3
전 남	여수시, 순천시, 곡성군, 구례군	4

##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요인

-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제12조(경비부담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

- 부담금 : 5,000천원

### 4. 작성자 :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